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교육 위기의 대응 방향

— 외국의 학력 격차 해소·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

이 한 주*

목차

I. 서론	IV.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지원정책
II. 안전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위기	
III.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문제	V. 결론 -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대응 방향

I 국문초록 I

대규모의 자연재해나 붕괴, 감염 등의 사고는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는, 이른바 인재(人災)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학교와 학생들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기자재 수급의 어려움, 사용법 미숙, 교육 관련 콘텐츠 부족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학습 피로감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논문접수일 : 2022. 2. 6., 심사개시일: 2022. 2. 7., 게재확정일 : 2022. 2. 23.

많아지면서 가족들 간에 유대감이 강화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학력 격차, 아동 돌봄 등 교육의 문제를 검토하고, 외국에서 학력 격차 해소 노력, 아동 돌봄과 학교급식 지원 동향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안전, 학교 교육, 코로나19, 원격수업, 돌봄 정책, 급식 지원

I. 서론

과거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나 세월호 침몰, 사스(SARS), 메르스(MERS) 등으로 이어진 대형 사고는 2019년 12월 이후 발병한 코로나19(COVID-19, 이하에서는 코로나19라 한다.) 팬데믹(Pandemic)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은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고, 국가가 안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하며, 국민을 위하여 구체적인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대규모의 자연재해나 붕괴, 감염 등의 사고는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는 이른바 인재(人災)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2004년 재난의 예방·대비·복구와 그 외에 재난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가 구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었고,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학교와 학생들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기자재 수급의 어려움, 사용법 미숙, 교육 관련 콘텐츠 부족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학습 피로감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학생들의 불규칙한 등교로 돌봄의 부재, 학력 격차, 스트레스 증가 등의 새로운 문제도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들 간에 유대감이 강화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¹⁾

다음에서는 안전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상황을 검토하며(Ⅲ), 외국의 학력 격차 해소정책·아동 돌봄과 학교급식 지원 동향을 살펴보며(Ⅳ), 현재의 교육 위기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안전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위기

1. 안전의 의의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그런 상태’라 정의하는데,²⁾ 이러한 안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때, 이러

1) “온라인 수업’의 역설...학교폭력 줄었지만 아동학대는 늘어” - 한겨레 2021.06.1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293.html) (방문일자: 2022/01/11)

2) 표준국어대사전.

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위에서의 정의만으로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안전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다만 위험의 반대개념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위험’도 안전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그 개념이 뜻하는 내용과 범위가 불명료한 개념이다.³⁾

우리 헌법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제5조, 제37조, 제50조 등은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은 기본권으로 개인의 안전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토와 주권의 보장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 이해된다. 한편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를 천명한 것이고, 현재 국민뿐만 아니라 후대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등을 모든 종류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안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는 ‘각종 재해의 예방’과 ‘그러한 재해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여 안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안전’ 및

3) 김소연,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인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7, 176면; 신용인, “위험사회와 안전권 -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 안전 -”,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6-7면.

4) 이한태·전우석,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27-128면.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이념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⁵⁾ 또한, 이 법은 ‘안전관리’를 정의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⁶⁾ 안전관리의 대상이 다양한 형태의 재난 관련 사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⁷⁾

2. 학교의 안전 관련 법제와 학교 교육의 위기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제3항에서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면서, 정규수업 외에도 급식, 방과 후 돌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등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의5).⁹⁾ 그리고 「아동복지

5) 제2조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6) 제3조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윤인숙, “안전권”,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1-06, 한국법제연구원, 2018, 9-11면.

8)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책무가 있고,¹⁰⁾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¹¹⁾ 그 외에도 안전기준의 설정(제30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제31조),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제44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¹²⁾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교육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020년 1학기에 세 번의 개학 연기한 후에 결국 ‘온라인

10)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11)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12)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¹³⁾ 학교 개학이 어렵게 되자 교육부는 대면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면서 EBS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룸, e-학습터 등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줌(ZOOM)이나 구글 미트(Google Meet)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였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보급이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부문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온라인 수업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고, 대면수업과 비교해서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수업 효과가 떨어져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학생들 간에 학력 격차는 더 벌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¹⁴⁾

그 외에도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부담을 증가시켰는데, 특히 학교의 돌봄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맞벌이 가정이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¹⁵⁾ 한편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면서 학생들이 단체급식을 못하게 되어 가정에서 학생들의 점심 식사까지도 부담해야 했고,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큰 위기를 겪었다.¹⁶⁾

13) “고3·중3부터 온라인 개학...이르면 4월말부터 대면수업 병행”연합뉴스 2020년 3월 3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1078652004?input=1195m>) (방문일자: 2022/01/24)

14) “평준화 교육 집착한 사이에...소득별 사교육비 5배 격차” 매일경제 2021년 6월 11일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6/567627/>) (방문일자: 2022/01/29)

15) “집단돌봄 미답장고 가족돌봄 ‘그림의 떡’...맞벌이 부모 시름” 한겨레 2020년 2월 25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9815.html>) (방문일자: 2022/01/29)

16) “코로나19 개학 연기,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도 ‘울상’” 뉴시스 2020.03.03.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03_0000941026&clID=10803&pID=14000) (방문일자: 2022/01/29)

Ⅲ.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문제

1. 학력 격차의 문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불규칙한 등교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 원격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는 대면수업과 비교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양적·질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온라인 교육환경의 차이 등으로 비대면 교육환경이 평등하지 않아 학생들 간에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데, 특히 맞벌이 부부와 같이 일과시간 중에 자녀의 돌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교육을 달리 받게 되거나 못 받는 경우 학생들의 교육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 수준의 차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격차도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IT 인프라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과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격차를 의미한다. 이때 발생한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했을 때까지도 극복하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미래 사회에 모든 분야에서 인권보장의 총체적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¹⁷⁾

교육부는 2020년 두 학기 동안에 이루어진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를 2021년 1월 28일 발표했는데, 원격수업 지속 의향에 대해 교사는 69.2%, 학생은 56.7%, 학부모는 28.4%의 찬성을 보였다.

17) 이장희,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인권 문제의 조망”, 「인권법평론」 제26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21, 60면.

교사의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해서, 학생과 특히 학부모의 만족도는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실제로 원격수업으로 교사들이 느끼는 ‘비대면 교육’ 학습격차는 1학기 79%, 2학기 68.4%로 나타나고 있고, 학부모가 체감하는 학습격차는 2학기에 62.8%이다.¹⁸⁾ 학습격차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원격수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¹⁹⁾

2. 학생 돌봄의 문제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이 전면 실시되거나 대면교육과 병행 실행되면서 아동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증가했다.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시설의 운영 단축 및 중단은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했다. 특히,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돌봄, 급식 등을 제공하던 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육, 식사는 온전히 보호자의 몫이 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가정 내에서 돌봄과 양육 시간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거나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²⁰⁾

아동은 코로나19 상황 자체에서 느끼는 부담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재난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아동 발달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코로나19로 경제적·

18) “평가 엇갈리는 원격수업, 만족도는 갈수록 높아졌다”, 국민일보 2021.01.2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6347>) (방문일자: 2022/01/25)

19) 김정희, 앞의 논문, 18-19면.

20) 이봉주·장희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폭력 잠재유형화와 잠재유형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70권 제1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21, 148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 곁에 있다가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보호망인 이웃과 지역경제, 가정의 붕괴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²¹⁾

코로나19 상황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국내외에서 과거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도 있었지만,²²⁾ 이는 실제로 아동학대가 감소했다기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아동학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19와 사회적 관심의 확대로 아동학대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²³⁾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 폭력 상황이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우므로 아동 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동 폭력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 폭력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런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활동 제약과 아동 관련 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모니터링과 감시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동 폭력이 은밀하고 빈번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²⁴⁾

21) 정익중 외 2인,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제69권 제4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20, 62면.

22) “작년 ‘아동학대’ 신고 첫 감소…코로나 때문?” - 경향신문 2021.01.10.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1102049005>) (방문일자: 2022/01/14)

23) “아동학대 검거 19.5% 증가…‘사회적 관심과 코로나 영향’ - 뉴스1 2021.05.08. (<https://www.news1.kr/articles/?4299945>) (방문일자: 2022/01/14)

24) 이봉주·장희선, 앞의 논문, 149-150면.

IV.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지원정책

1. 학력 격차의 문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학교 출입이 제한되면서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이 감소하였고, 사회성이 약화하기도 하였다.²⁵⁾ 무엇보다도 학력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별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가. 미국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3월 18일 기준으로 39개 주 초·중등학교 약 92,000여 곳이 휴교하여 약 4,210만 명의 학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²⁶⁾

이의 대응책으로 2020년 온라인 수업을 시행했다. 과거에 학생이 전염성 질환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학교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었는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습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은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²⁷⁾ 그러나 저소득층, 유색인종 학생들을

25) 김창환, “코로나 19의 부정적 영향과 회복을 위한 교육적 과제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2021, 115-119면.

26) 미국 전체 초·중등학교의 수는 약 132,000곳이고 학생 수는 약 5,660만 명으로, 전체 학교 중 약 70%가 휴교 상태이고, 전체 학생 중 약 75%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 - “Map: Coronavirus and School Closure” Education Week 2020.03.25. (<https://www.edweek.org/leadership/map-coronavirus-and-school-closures-in-2019-2020/2020/03>) (방문일자: 2022/02/05)

27) “If Coronavirus Gets Worse in the U.S., Online Learning Can Fill the Gaps” Education Week 2020.02.14. (<https://www.edweek.org/technology/if-coronavirus>)

중심으로 데이터 요금제에 제한이 있거나, 컴퓨터 등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예도 있었다.²⁸⁾

켄터키주는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방송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교수·학습자료 전송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다.²⁹⁾ 오리건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화한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름학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서 주 정부 및 연방정부 기금 3억 2,500만 달러를 지원했다.³⁰⁾ 연방정부도 주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 여름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이를 위해서 연방 교육부는 주 교육 당국과 ‘Summer Learning & Enrichment Collaborative’라는 공동사업을 체결했고, 2021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ARP)’ 중 여름 학습지원금으로 책정된 12억 달러를 포함한 연방 기금을 지원했다.³¹⁾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업 손실 피해를

-gets-worse-in-the-u-s-online-learning-can-fill-the-gaps/2020/02) (방문일자: 2022/02/05)

28) “Everybody Ready for the Big Migration to Online College? Actually, No” The New York Times 2020.03.25. (<https://www.nytimes.com/2020/03/13/upshot/coronavirus-online-college-classes-unprepared.html>) (방문일자: 2022/02/05)

29) “Pilot project aims to help at home learners without internet” AP News 2020.12.18. (<https://apnews.com/article/technology-television-coronavirus-pandemic-kentucky-education-7c17b35c7de7e27cc0cef57dbe5c14b7>) (방문일자: 2022/02/05)

30) “Oregon to spend \$325M to help kids catch up on learning” AP News 2021.03.30. (<https://apnews.com/article/kate-brown-coronavirus-pandemic-oregon-education-37bd54e03d8c90a7def1d62eadd24fd2>) (방문일자: 2022/02/05)

31) “Miguel Cardona Unveils Summer Learning Partnership, Releases Some COVID-19 Aid” Education Week 2021.03.24. (<https://www.edweek.org/policy-politics/miguel-cardona-unveils-summer-learning-partnership-releases-some-covid-19-aid/2021/03>) (방문일자: 2022/02/05)

고려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유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자녀가 학업 이수 요건을 모두 달성했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자녀의 상급 학년 진학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한 추가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³²⁾

연방 교육부는 학업 손실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로드맵의 하나로 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가을학기 학업 회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³³⁾ 그리고 연방 교육부가 ‘교육혁신과 연구(Education Innovation and Research, EIR)’ 프로그램의 하나로 미국 전역의 30개 학군과 고등교육기관과 비영리단체에 1억 8,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조금은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성취 개선을 위한 증거기반 프로젝트의 개발, 실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³⁴⁾

32) 이 법안은 2021·2022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부모는 7월 15일까지 유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아동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 “Lawmakers want kids to have option for extra year in school” AP News 2021. 05.13. (<https://apnews.com/article/health-coronavirus-pandemic-education-government-and-politics-560e285293bcb9df78214ad25eab34d4>) (방문일자: 2022/02/05)

33) 구체적으로 1) 가정에서 믿을 수 있도록 안전한 대면학습 환경을 지원할 것, 2)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지원할 것, 3) 질 높은 과외학습 등 집중적인 학습지원 방식을 이용할 것, 4) 학생의 학습 전환 및 재참여를 지원할 것, 5) 학습지원을 위하여 질 높은 평가체계를 활용할 것과 같은 노력으로 소외계층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 “New Resource Details Evidence-Based Strategies to Address Impact of Lost Instructional Time by Using American Rescue Plan Funding”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08.31.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new-resource-details-evidence-based-strategies-address-impact-lost-instructional-time-using-american-rescue-plan-funding>) (방문일자: 2022/02/05)

34) U.S. Department of Education 보도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Announces

2021년 12월 국가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및 8학년 학생 중 99%가 등교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9월 기준 전국 공립학교 전체가 대면 수업을 제공했으며, 3분의 1은 일부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³⁵⁾

나. 영국

영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휴교령으로 취약계층 학생,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 학습 의욕이 낮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학업성취도 격차가 단기간에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을 했다. 2020년 6월 정부를 대상으로 학습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여름학교(summer schools)에 대한 계획 수립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학습결손을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기도 했다.³⁶⁾ 잉글랜드(England) 정부는 초등학교의 정상 등교 재개를 강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의 두려움 때문에 초등학교 수천 곳이 수업 재개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³⁷⁾

\$182 Million in Education Innovation and Research Grants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for Underserved Students” 2021.12.13.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announces-182-million-education-innovation-and-research-grants-improve-academic-achievement-underserved-students>) (방문일자: 2022/02/05)

35) NCES 보도자료 “New NCES Data Show Shifts in Mode of Instruction and Health and Safety Strategies at Nation’s Public Schools” 2021.12.15. (https://nces.ed.gov/whatsnew/press_releases/12_15_2021.asp) (방문일자: 2022/02/05)

36) “Organise catch-up summer schools to help disadvantaged pupils, UK told” The Guardian 2020.06.03.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0/jun/03/organise-catch-up-summer-schools-to-help-disadvantaged-pupils-uk-told>) (방문일자: 2022/02/02)

37) “Thousands of primary schools in England snub call to restart classes” The

영국 정부는 학교에서 학생이 디지털 기기가 원격교육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 보호 장치와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보호 격리 중이거나 지역 봉쇄령(local lockdown)에 영향을 받는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노트북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부는 빈곤층 학생이 휴교 기간 중 발생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전국 개인교습 프로그램(National Tutoring Programme, NTP)’을 실시했고,³⁸⁾ 코로나19로 수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영어, 수학, 그리고 기타 학문 및 직업 관련 과목을 대상으로 만 16~19세 학생에게 소집단 지도를 제공하는 ‘16-19 Tuition Fund’를 지원했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1억 200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했다.³⁹⁾

2021년 10월 스코틀랜드(Scotland) 자치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Education Recovery: Key Actions and Next Steps’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3,500명의 교사와 500명의 보조교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빈곤이 원인인 학업성취도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10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는 자치정부의 총선 공약도 포함되었다.⁴⁰⁾

Guardian 2020.06.03.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0/jun/03/two-in-five-schools-in-england-yet-to-reopen-to-any-more-pupils>) (방문일자: 2022/02/2)

- 38) NTP의 주요 목적은, 1) 2020년 가을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수만 명의 학생에게 크리스마스 연휴 후에 보충수업을 제공하고, 2) 각 학교는 대면 또는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가장 적합한 교습 제공자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3) 대학원생, 교사,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1만 5,000명의 개인 지도교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 “Coronavirus: Poorest pupils can enrol for catch-up tuition” BBC 2020.11.02. (<https://www.bbc.co.uk/news/education-54753088>) (방문일자: 2022/02/02)
- 39) “Catch-up cash for 16-19 Tuition Fund announced” Times Education Supplement 2021.02.24. (<https://www.tes.com/magazine/archived/catch-cash-16-19-tuition-fund-announced>) (방문일자: 2022/02/02)
- 40) “Government launches Covid education recovery plan” Times Education Supplement 2021.10.05. (<https://www.tes.com/magazine/news/general/government>)

2022년 2월 교육부는 학교에 대한 위드 코로나 계획의 세부 내용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최근 하원 의회에서 현재의 모든 코로나19 규제를 2월 말에 해제할 가능성을 밝혔다. 그러나 학교들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략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명확한 상황을 우려하였다.⁴¹⁾

다. 프랑스

프랑스는 코로나19로 휴교 중에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메일,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나, 디지털 기기 사용과 접근성의 문제로 온라인 강의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게 학력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⁴²⁾ 2020년 6월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업에 뒤처진 학생들의 학업 부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약 100만 명의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강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약 2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⁴³⁾ 초중등학교 모두 등교수업을 재개하면서 80%의 초등학교가 등교수업을 했지만 등교하는 학생은 22%에 불과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⁴⁴⁾

launches-covid-education-recovery-plan) (방문일자: 2022/02/02)

41) "Schools in the dark over 'living with Covid' strategy" Times Education Supplement 2022.2.16. (<https://www.tes.com/magazine/news/general/schools-dark-over-living-covid-strategy-0>) (방문일자: 2022/02/24)

42) "CORONAVIRUS ET ÉCOLES FERMÉES: LES DIFFICULTÉS DES PROFS POUR CONTINUER À FAIRE COURS" BFM TV 2020.03.24. (https://www.bfmtv.com/societe/education/coronavirus-et-ecoles-fermees-les-difficultes-des-profs-pour-continuer-a-faire-cours_AN-202003240037.html) (방문일자: 2022/02/03)

43) "Jean-Michel Blanquer annonce des «colonies de vacances apprenantes» pour un million d'élèves" Le Figaro 2020.06.07. (https://etudiant.lefigaro.fr/article/jean-michel-blanquer-annonce-des-colonies-de-vacances-apprenantes-pour-un-million-d-eleves_dcef2c5c-a861-11ea-968e-aabde546e914/) (방문일자: 2022/02/03)

44) "DÉCONFINEMENT: UNE RÉOUVERTURE DES ÉTABLISSEMENTS SCOLAIRES

2021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봉쇄 결정이 임박해지고, 이에 등교수업 중단 또는 겨울방학 연장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생의 교육 격차 문제나 학생의 심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등교수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⁴⁵⁾ 2022년 1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임시 폐쇄 조치된 학급은 14,380개에 이르는데, 정부는 등교 조건을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⁴⁶⁾

2. 아동 돌봄 지원

가. 아동 긴급돌봄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필수근로자는 반드시 직장에 갈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안전한 아동 돌봄이 가능해야 하므로 미국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았던 뉴욕주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했다. 미국의 일부 주는 아동과 부모를 위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주지 주변에 자격을 갖춘 돌봄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돌봄센터 등록 지도’를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쉽게 지역, 건강 및 안전 정보, 아동 나이, 수용 인원 및 양육 시간

EN DEMI-TEINTE” BFMIV 2020.05.29. (https://www.bfmtv.com/societe/education/deconfinement-une-reouverture-des-etablissements-scolaires-en-demi-teinte_AN-202005290070.html) (방문일자: 2022/02/03)

45) “Jean-Michel Blanquer veut maintenir les ?coles ouvertes en cas de reconfinement” BFMIV 2021.01.25. (https://www.bfmtv.com/societe/education/jean-michel-blanquer-veut-maintenir-les-ecoles-ouvertes-en-cas-de-reconfinement_AN-202101250463.html) (방문일자: 2022/02/03)

46) “Covid-19 : plus de 14 000 classes fermées, un niveau inédit depuis le printemps de 2020” Le Monde 2022.1.14. (https://www.lemonde.fr/education/article/2022/01/14/covid-19-plus-de-14-000-classes-fermees-un-niveau-inedit-depuis-le-printemps-de-2020_6109553_1473685.html) (방문일자: 2022/02/03)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와 관련해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는 필수근로자만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거나, 필수근로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 외의 근로자는 최대한 유연 근무와 유급휴가 사용, 장기 휴가와 재택근무를 하며 직접 아동을 돌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여러 유형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돌봄센터, 가정 내 파견 돌봄서비스, 방과 후 학교 돌봄센터, 친구·가족과 이웃의 긴급돌봄 서비스 등이다. 만약 친구, 가족과 이웃이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본다면 ‘Working Connections Child Care’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⁴⁷⁾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2022년 1월 2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임시 조치의 해제와 ‘플랜A’로의 복귀를 위해서 시행 중이었던 ‘플랜B’⁴⁸⁾ 조치를 종료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유아 및 보육 제공자

47) 정익중,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3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49-50면.

48)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 확산에 대응하여 가을과 겨울에 시행할 변경안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은 방과 전·후의 랩 어라운드(wrap-around)를 포함하여 대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소처럼 개방하고, 치료사와 아동 서비스 전문가는 지속해서 시설에 방문하도록 했다.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잉글랜드 교육기준청(Ofsted)의 점검은 안전 및 보호 관련 문제가 있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음 학기까지 잠정 보류하고, 교직원들이 시설 내를 이동하거나 공동 구역에 있을 때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며, 이는 시설 방문자에게도 적용하였다. 공동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5세 미만 유아 부모와 자녀 모임은 시설 전체를 빌리거나 그룹이 독립된 공간에 있는 경우에 참여자와 교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What ‘Plan B’ means for early years and childcare in England” - PACEY 2021.12.09.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what-plan-b-means-for-early-years-and-chi/>) (방문일자: 2022/02/05)

를 위한 조치'(Actions for Early Years and Childcare Providers)도 변화되었는데, 영유아 보육시설의 이용 우선순위 부여에 대해서, 1) 핵심 근로자의 자녀와 취약계층의 영유아, 그 외에 지원이 필요한 환경이라고 판단되는 영유아, 2) 3-4세,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의 영유아, 3) 그 이하의 어린 연령층의 순서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⁴⁹⁾

일본 누마즈시(沼津市)는 부모가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으로 보호자의 백신 접종 당일 및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반응으로 일시적 돌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로 임시 보육을 지원했다.⁵⁰⁾ 그리고 에도가와구(江戸川区)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나 휴교일에 교정,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스쿠스쿠 학교'(すくすくスクール)와, 보호자의 취업 등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출결을 확인하는 '학동(學童) 클럽'을 운영하였다.⁵¹⁾

한국은 학교 내 긴급돌봄에 학교 교직원인 아닌 돌봄 교사를 투입하는데, 코로나19의 감염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부

49) "Prime Minister announces a return to 'Plan A' in England" - PACEY 2022.01.22.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prime-minister-announces-a-return-to-plan-a/>) (방문일자: 2022/02/05)

50) 실시일은 2021.10.14. - 2021.21.28로 이용기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1회당 3일 이내(접종당일+정중 다음날(부작용 시)+접종 이틀 후(부작용 시))이고, 지역 내 공립 유치원 등 7개 시설을 지원한다. - "子育て世帯へ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ワクチン接種サポートを行います" - 市民福祉部子育て支援課 2021.10.13. (https://www.city.numazu.shizuoka.jp/new_cov_vaccine/kosodatesetai.htm) (방문일자: 2022/02/02)

51) 스쿠스쿠학교는 자유 참여로 모든 비용은 무료이고, 학동클럽은 출석 확인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すくすくスクールガイド" - 江戸川区教育委員会 事務局 教育推進課. (<https://www.city.edogawa.tokyo.jp/documents/20391/guide.pdf>) (방문일자: 2022/02/02)

모들이 아이들을 긴급돌봄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⁵²⁾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총 15개 시·도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⁵³⁾⁵⁴⁾

나. 아동의 양육비, 바우처와 물품 지원

국가별로 아동수당에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자격 기준 외

52) 정익중, 앞의 논문, 51면.

5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2022.01.26.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9933) (방문일자: 2022/2/01)

54) 〈긴급돌봄 관련 지원〉

국가	대상자 조건	특이 사항
미국	필수근로자만 이용 가능 또는 우선권	이용 가능 돌봄센터 지도 제공 가족, 친구, 이웃 또는 돌봄 제공 가능한 그 외 사람에게 보육보조금 제공
영국	필수근로자와 취약계층 자녀	무상보육 및 세금 감면 혜택받는 가정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함
호주	필수근로자와 취약계층 자녀에게 우선권 제공	집에서 자녀 양육 시 수수료 지불하지 않고 등록상태 유지 가능
싱가포르	필수근로자만 이용 가능	유치원 참석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지원 및 지원금 제공(정부 50 : 보호자 50)
일본	방과 후 스쿠스쿠 학교 또는 학동클럽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또는 보호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곤란한 초등학생	교원 자격을 가진 교직원 투입
한국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	시간제/종일제 돌봄 이용 가정 소득 유형 따라 차등 지원

〈정익중, 앞의 논문, 50면 표 1〉

에 소득 수준을 추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뉴욕 주는 필수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양육비 외에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했고, 돌봄 종사자들이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장갑, 물티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아동수당과 (소득이 낮은 경우에 받는) 자녀보충지원금과 함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기존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 했다. 2022년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1) 학교와 유치원이 폐쇄되어 만 12세 이하의 자녀나, 장애와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정 내에서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하면 20주까지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⁵⁵⁾ 2) 자녀가 아플 경우 휴가 기간을 연장하며,⁵⁶⁾ 3) 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⁵⁷⁾ 그 외에도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학업, 체력 및 정신의 회복이 필요한 아동과 청

55) 코로나19로 학교나 유치원이 폐쇄하거나 대면 수업의 부재, 방학의 장기화 등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2022년 3월 19일까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 및 한가정 부모들이 자녀 돌봄으로 인해 생긴 소득 손실의 67%, 최대 2,016유로까지 매달 보상 받을 수 있고, 총 20주(부모 각각 10주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20주)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한 번에 모두 신청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다.

56) 부모의 '아동 병가일'은 1자녀 가정은 부모 각각 30일, 한부모 가정은 60일까지, 다자녀 가정은 각 부모가 최대 65일, 한부모의 가정일 경우 1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동 병가일은 아동이 아픈 경우 외에도 학교나 유치원이 코로나로 폐쇄되었거나 한시적으로 열어 아이를 돌볼 곳이 없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런 특수 상황에 따른 아동 병가일 수의 확장은 2022년 3월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57) 공보험에 가입한 모든 부모는 아동 병가로 손실된 세후 소득의 최대 90%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에 학교와 유치원이 코로나로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공제 가능 최고 소득기준이 1,908유로에서 4,008유로로 확대했다.

소년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 회복 프로그램(Aufholprogramm für Kinder und Jugendliche)’을 위해서 20억 유로를 지원했고, 주로 한 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아동 보조금(Kinderzuschlag)은 2022년 3월 말까지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209유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⁵⁸⁾

한편 국가별로 돌봄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독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 출산 후 부모수당의 조건을 완화하여 맞벌이 또는 소득에 변동이 생긴 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보호자가 자녀를 돌볼 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보호자가 필수근로자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유치원 등원이 어려운 가정에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⁵⁹⁾

그리고 바우처 지급을 통해서도 생활비와 아동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휴교 기간에 무상급식 대상 아동에게 슈퍼마켓 바우처를 지급해서, 지역에 따라서 보호자가 특정 센터를 방문하여 음식을 받아오거나, 집으로 배송받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했다.⁶⁰⁾ 프랑스는 보육시설에 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응급식료품 바우처를 제공했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한 명 이상 맡기고, 소득이 월 1000유로 미만의 모든 가정에 응

58) "Kita- und Schulbetrieb, finanzielle Entlastung, Beratungsangebote Informationen für Familien" -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2022.02.0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unterstuetzung-fuer-familien-1738334>) (방문일자: 2022/02/05)

59) 기존에 아동이 다니던 유치원 운영자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각각 50:50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 2020.

60) 그 외에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기도 했다. - BBC News, 2020.

급식료품 바우처를 지급했다.⁶¹⁾

일본 후나바나시(船橋市)는 신종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2022년 1월 26일 - 2월 13일 유치원 등은 원칙적으로 운영하지만, 감염 예방·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등원을 자제하고 가정 보육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가정 보육에 협조하면 등원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했다.⁶²⁾ 싱가포르의 정부 차원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식료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좀 더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의 지원 등을 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 상반기 ‘아동돌봄쿠폰’을 한시적으로 지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4개월 동안 지급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1~6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20만 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는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 비용을 하루 5만 원을 최대 10일까지 지급했다.⁶³⁾ 그 외에도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은 ‘희망급식바우처’를 지급하여 학생당 10만 원을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⁶⁴⁾⁶⁵⁾ 2022년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61) 해당 가족들은 우편으로 3.5유로의 수표 20장, 1인당 총 70유로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수표는 가맹점에서 식품 및 위생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 2020.

62) 감면 대상 기간은 등원 자제 기간으로 등원을 자제한 일수만큼 보육료는 1일 단위로 계산하여 감면하는데, 감면 적용 시 보호자의 별도의 절차는 불필요하고 후나바나 시가 각 시설별 원아의 등원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료를 감면한다.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防止に係る保育所などの対応について” - 船橋市 2022.02.14. (<https://www.city.funabashi.lg.jp/kodomo/hoiku/002/p077842.html>) (방문일자: 2022/02/04)

63) 정익중, 앞의 논문, 51-53면.

- 64) 그러나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소규모학교, 꿈나무 카드 수혜자, 탄력적 희망 급식 수혜자, 돌봄 대상 등은 매일 등교 학교에서 급식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에서 제외했다.
- 65) 〈아동 양육비, 바우처와 물품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양육비 지원	[아동 대상] 기존 지원 수당에 추가 지급 형태	일반 가정	미국 텍사스주 - 아동당 500달러 추가 지원 뉴욕주 - 주정부 평균 소득 수준 85%까지 자격 확대 독일 - 한 달에 아동당 최대 185유로 지원 - 가구당 300유로 추가 보너스 지급
		한부모 가정	독일 - 세금 감면액이 일반 가구의 2배 이상
	[보호자 대상] 양육비 지급		미국 뉴욕 [육아장학금] - 모든 필수근로자에게 육아지원금 제공 독일 [부모수당] - 기존 부모수당의 기준 완화/ 15% 세금 감면 (소득에 변동이 생긴 부모, 맞벌이 부모에게 우선 혜택) 싱가포르 [보호자 수당] - 휴원 기간 동안 유치원과 보호자에게 50:50 보조 금 지급 한국 [가족돌봄비용] -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1일 5만 원 최 대 10일 지원 - 유아지원금 매년 인상하여, 국공립유치원 10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28만원
바우처		영국 - 무상급식 아동 대상, 식료품 수령, 현금, 바우처 지원 프랑스 [응급 식료품 바우처] - 보육시설 등교, 월 소득 1000유로 이하 가정, 바우 처 지원 싱가포르 - 모든 아동 대상, 식료품 및 양육비 바우처 지원 한국 [아동돌봄쿠폰]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의 지원을 확대했는데, 국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28만 원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유아 지원학비를 월 5만원 추가 인상했다.⁶⁶⁾

다. 돌봄 휴가 지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동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장 내에서의 휴가 또는 휴직제도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국가 중 몇몇 지역은 모든 시민의 외출을 가능하면 규제하는 이동 제한 조치를 하면서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출근이 힘들어졌고, 아이들도 집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여러 유형의 아동 돌봄을 위한 유급 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역별로 지원내용과 방법이 다르지만, 자가격리와 가족의 간병 돌봄 유급휴가 지원, 고용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⁶⁷⁾

프랑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유급휴가와 특별 육아휴직을 보장하는데, 고용주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쉽게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특히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16

	-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미만 아동), 40만 원 상당 - 아동돌봄지원금, 비대면학습지원금 - 희망급식바우처(서울시 교육청)
--	---

〈정익중, 앞의 논문, 52면 표 2〉

66) 교육부 보도자료,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2022.02.2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9047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방문일자: 2022/02/03)

67) 기존 유급 가족 의료휴가를 통해서 본인의 병가와 함께 동거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도 유급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직장내 출근하지 못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고 재정적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Washington Paid Family & Medical Leave, 2020.

세 미만의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주의 신청으로 1회 특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근로 조건상 유아 휴직이 어려운 근로자는 유급 병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동 제한 기간에 6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⁶⁸⁾ 그리고 16세 미만의 자녀의 보육 방안이 없는 부모와 임신 등 건강이 취약한 근로자에게는 특정 병가제도를 시행했다.⁶⁹⁾

영국은 법정 유급휴가의 기간을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최소 28일부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제공되는 휴가의 대상자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했다.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동거 가족으로 인한 자가격리 또는 당국의 자체 격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⁷⁰⁾

일본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임시 휴교 등을 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를 돌보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0명까지(1인당 5만엔, 상한 50만엔) 지원금을 제공했다.⁷¹⁾

한국은 코로나19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

68) 근로자는 이 병가의 첫날부터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일일 수당과 고용주로부터의 추가 급여를 받는다. 병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의 50% 이상, 개별 협약에 따라 최대 10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정익중, 앞의 논문, 55면.

69) “CORONAVIRUS : PROLONGATION DE L'ARRÊT GARDE D'ENFANTS” - SORTIR PARIS 2020.03.04. (<https://www.sortiraparis.com/enfant-famille/articles/210498-coronavirus-prolongation-de-l-arret-garde-d-enfants>) (방문일자: 2022/02/02)

70) GOV.UK, 2020.

71) 사업주는 1)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임시 휴교 등을 했을 경우,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특별 유급 휴가(4시간 이상)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2)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교 등을 한 경우에도 근무할 수 있는 병행 구조로써, 재택근무, 단축 근무 제도, 유연 근무 제도, 개학 또는 방학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제도(시차 출근 제도), 베이비시터 비용 보조제도 등 중의 하나를 회사내에 안내해야 한다. 厚生労働省 - 両立支援等助成金(育児休業等支援コース(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応特例))をご活用ください 2021.09.30. (https://www.mhlw.go.jp/stf/newpage_20699.html) (방문일자: 2022/01/30)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1일당 5만 원씩 최대 10일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및 휴교에 들어가면서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로 늘게 되었다. 그리고 휴교 기간에 자녀의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에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주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증액해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것이다.⁷²⁾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재택,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⁷³⁾⁷⁴⁾

72) 2022년 1월 1일부터 대규모기업(중견기업 제외)의 지원을 폐지했고, 간접노무비 단가인상(월 30만원)과 대체인력인건비 지원폐지 등 지원수준을 변경했으며, 지원대상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으로 축소했으며,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편되었다.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1201368) (방문일자: 2022/01/28).

73) 정익중, 앞의 논문, 53-55면.

74) <돌봄휴가 지원>

제도		내용	가족돌봄 허용	유급 인정
미국	Paid Leave	가족 중 돌봄 필요한 구성원이 심각한 건강 상태인 경우		최소 5일간 유급병가 제공 및 근로자 권리 보호
	Paid family & Medical leave	가족돌봄 병가 및 개인 병가 제도		유급 및 휴가 지원
프랑스	특별 육아휴직	16세 미만 자녀 보호자인 직원 육아 돌봄 위한 휴직		유급휴직이 어려운 경우 유급휴가 지원
	특정 병가제도	자녀돌봄 가정 부모		임신 등 건강 취약 직

3. 급식 지원

가. 미국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학교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왔고, 약 2,000만 명의 학생에게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지원해왔다. 학교 수업이 없는 여름방학이나 기상 악화로 인한 휴교 시에도 학교 식당은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교가 휴교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저소득층 학생의 영양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그동안 저소득층 가정은 대부분 학교의 무료 급식을 이용해왔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한 휴교 조치로 많은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오하이오(Ohio) 주의 신시내티(Cincinnati)시는 전체 학생 중 약 10%가 노숙자 학생으로 추정하는데, 노숙자 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뉴욕(New York)주의 뉴로셸(New Rochelle)

제도	내용	가족돌봄 허용	유급 인정
		휴직 권고 및 병가 절차 간소화	원 (보수의 84% 지원)
영국	법정 유급휴가 기간 연장	동거인 중 확진 및 격리 대상자 있는 근무자 해당	법정 유급휴가로 최대 28일 고용주 지급 보장
한국	가족돌봄휴가	돌봄 필요한 가족 (확진 및 격리 대상자, 돌봄 자녀) 있는 자 신청(10일 → 20일)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 신청자 중 1일 5만 원, 최대 10일 지원(한시적)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자녀돌봄을 위한 주 15~35시간 근무시간 단축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정익중, 앞의 논문, 54면 표 3)

시는 지역 전체가 봉쇄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방위군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고, 메릴랜드(Maryland)주의 볼티모어(Baltimore)시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기간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했다.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은 지역의 교육 당국은 학교급식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미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학교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고, 교육 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⁷⁵⁾

기존에 무료 급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이 반드시 직접 급식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는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이동이 제한되고 대대적인 휴교 조치가 이어지면서 기존의 급식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USDA는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무료 급식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그 방안은 학부모가 학교 영양사가 제공하는 ‘grab-and-go’라는 이름의 포장된 급식을 대신 받아서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직접 아동을 급식실로 데려가지 않더라도 급식 픽업(pick-up)이 허용되었다.

2020년 4월 당시 미국에서 최소 5개 주가 급식 제공을 연기 또는 조정하고 있었는데, 급식 관련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서비스가 운영되지 못했기 때

75) “Schools serve more than 20 million free lunches every day. If they close, where will children eat?” - The Washington Post 2020.03.16.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education/schools-serve-more-than-20-million-free-lunches-every-day-if-they-close-where-will-children-eat/2020/03/16/29c4f35a-655e-11ea-845d-e35b0234b136_story.html) (방문일자: 2022/02/02)

문이다. 이에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 제공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교들에 대해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⁷⁶⁾

2020년 9월 당시 관련 연구(Urban Institute study)에서, 대부분 학교가 문을 닫은 2020년 봄 학기에 급식 무료 또는 할인 혜택 대상자 2,000 만명의 약 60%만이 급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USDA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원격 학습자들이 무료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정책 변경이 없었다면 해당 비율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이에 USDA는 해당 정책 기한을 관련 재원이 고갈될 때까지 또는 2020년 말까지로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⁷⁷⁾

2021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급식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USDA가 각 주 정부가 ‘보조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이하 ‘SNAP’)'에 포함된 긴급 혜택(emergency benefits)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SNAP은 이미 연방의회를 통과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은 USDA가 학교 폐쇄로 인해 급식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아동에게 영양식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수당이체(Electronic Benefits Transfer, 이하 ‘EBT’) 지급액을 15%까지 인상하는 지침을 발표하도록 요청했다. 바이든 행정부

76) “New Rule Lets Parents Pick Up Free Meals for Children During Coronavirus Closures” - Education Week 2020.04.08. (<https://www.edweek.org/education/new-rule-lets-parents-pick-up-free-meals-for-children-during-coronavirus-closures/> 2020/03) (방문일자: 2022/02/02)

77) “Coronavirus Schools Briefing: Lunch Along With Learning” - The New York Times 2020.09.16. (<https://www.nytimes.com/2020/09/04/us/coronavirus-schools-briefing-lunch-along-with-learning.html>) (방문일자: 2022/02/02)

는 이번 조치를 통해 2개월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100달러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⁷⁸⁾

나. 영국

코로나19 상황으로 영국 정부의 휴교령에 따라 2020년 3월 초부터 핵심 직종 종사자의 자녀, 일부 취약계층 학생, 중증장애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의 등교가 금지되었다. 이후 5월에 정부는 잉글랜드(England)에서 무상급식 대상인 학생을 둔 가정에 주차 별로 바우처(voucher)를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 당시 잉글랜드 학생 중 약 130만 명이 무상급식 대상자였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무상급식 대상 학생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품권을 지급했다. 각 학교는 학생 한 명당 매주 15파운드의 상품권을 발급할 수 있는데, 학교 측은 바우처를 지급하더라도 일부 학생은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코틀랜드(Scotland) 자치 정부는 무상급식 대상 모든 학생이 지자체를 통해 계속 무상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고, 웨일스(Wales) 자치 정부는 무상급식 대상 아동을 위한 전국상품권 계획을 수립 중이었고, 해당 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학교와 지자체의 부담으로 무상급식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 했으며,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무상급식 학생의 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었다.⁷⁹⁾

78) "Biden Signs Executive Order to Boost Food Benefits for Children Missing School Meals" - Education Week 2021.02.10. (<https://www.edweek.org/policy-politics/biden-signs-executive-order-to-boost-food-benefits-for-children-missing-school-meals/2021/01>) (방문일자: 2022/02/02)

79) "Coronavirus: Free school meals children to get food vouchers" - BBC 2020.05.13. (<https://www.bbc.com/news/uk-52098076>) (방문일자: 2022/02/03)

자선단체인 ‘푸드 파운데이션(Food Foundation)’에 따르면 학교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영국 아동의 수가 매우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게 수입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학교 무상급식 신청자 140만 명에서 2020년 10월에는 추가로 9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푸드 파운데이션’은 무료 점심 혜택 기준을 국가의 보조를 받는 가정의 모든 아동(16세까지)으로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식사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무상급식 혜택 자격을 갖춘 아동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조치로 일부 학교에서 급식실을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심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예전에 무상급식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였다.

교육부는 학교 무상급식 신청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했고,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아동과 가정이 굶주리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했다. 예를 들어 봉쇄 기간에 학교가 부분적으로 휴교를 한 경우에도 무상급식 대상자에게 학교 무상급식을 제공하도록 확대하였고, 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 수준에 차이를 두어 지원하는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의 금액을 주당 20파운드(한화 약 2만 9,930원)로 일시적으로 인상했으며, 가정에 ‘응급 식사 지원(emergency food assistance)’을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들에 재정을 지원했고, 생계 곤란 가정 지원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 6,300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영국 정부는 ‘전국 식사 계획(National Food Plan)’을 통해 무상급식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유니버설 크레딧’ 수급 가구 중 150만 명의 7~16세 학생에게 추가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간 5억 7,000만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

로 추산했다.⁸⁰⁾

다. 프랑스

2020년 5월 11일 프랑스 파리 봉쇄령 해제로 초등학교의 개학, 등교가 결정되면서 통학, 방과 후 활동, 급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장-미셸 블랑케(Jean-Michel Blanquer) 교육부 장관은 5월 11일 유치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먼저 등교시키고, 그다음 주부터 점진적으로 나머지 학년 초등학교 학생을 등교시키며 한 학급당 15명을 넘지 않도록 학급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학, 등교와 관련하여 학부모 연합, 교육 전문가, 교육 노조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었고, 몇몇 지역은 여전히 개학, 등교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게다가 학생의 등교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개학 때 학생의 등교 및 급식실 이용자 수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다.⁸¹⁾

학교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된 이후에도 교육부는 급식실 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이 필요한 학생들만 급식하도록 권고했다. 급식하는 학생들의 위생과 환기에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면서 급식 제공 이후 매회 소독하도록 관리 감독했다.

2021년 5월 당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같은 학급 학생들은 함께 급식하고, 다른 학급과는 최소 2미터의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80) "Surge in number of UK children applying for free school meals" - The Guardian 2020.10.28.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0/oct/12/surge-in-number-of-uk-children-applying-for-free-school-meals>) (방문일자: 2022/02/03)

81) "CANTINE, TRANSPORT: LES ZONES D'OMBRE AUTOUR DE LA REPRISE DE L'ÉCOLE" - BFMTV 2020.05.13. (https://www.bfmtv.com/societe/education/cantine-transport-les-zones-d-ombre-autour-de-la-reprise-de-l-ecole_AN-202004220189.html) (방문일자: 2022/02/03)

식사를 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같은 무리의 학생들만 식사하고, 다른 무리의 학생들과는 2미터 거리 두기를 유지하도록 권고했었다.⁸²⁾

2021년 9월 코트도르(Côte-d'Or)주 슈노브(Chenôve) 시의 6개 학군은 국가 주도의 빈곤퇴치 대책으로 학생들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에서의 아침식사’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서 슈노브 시 12개 교육시설(6개 초등학교와 6개 중학교) 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⁸³⁾

V. 결론 - 학교 교육 위기의 대응 방향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일반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언택트(Untact)를 넘어서 온택트(Ontact)가 일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면서 가정 내에 체류하는

82) “Retour à l'école lundi: Blanquer recommande de ne pas envoyer les enfants à la cantine si possible” - BFMTV 2021.05.12, (https://www.bfmtv.com/sante/jean-michel-blanquer-recommande-de-ne-pas-envoyer-les-enfants-a-la-cantine_AN-202104230154.html) (방문일자: 2022/02/03)

83) 교육시설에 등록된 학생 중 13%가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통계 이후에, 2018년 마크롱(Macron) 대통령이 ‘학교에서의 아침식사’를 제시하면서 급심한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이 계획은 약 400개의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시범 운영되었다. 2019년 9월부터 일반화되었고 2019~2020학년도에는 153,000명의 학생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 “Des petits déjeuners gratuits pour les élèves des écoles de Chenôve” - 3Bourgogne- Franche-Comté 2021.09.20,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bourgogne-franche-comte/cote-d-or/chenove/des-petits-dejeuners-gratuits-pour-les-eleves-des-ecoles-de-chenove-2258176.html>) (방문일자: 2021/01/29)

시간이 길어지면서 돌봄, 급식 등에 대한 부담이 부모에게 가중되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대응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수업은 학교 수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동영상 강의로 인식되었던 온라인 수업(강의)이 2020년 초부터 대면 수업을 대체하면서 초등학생들도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중력 저하 또는 학력이나 디지털 격차의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다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학생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고, 이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했다. 영국이나 프랑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유사하게 학교 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학력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학교’는 무엇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향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의 급식이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방법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휴교하면 급식도 중단되고, 돌봄서비스도 시간적인 제약이나 형식적인 학생 관리로 인한 불안으로 보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저소득계층 학생이 급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급식이

어려우면 도시락을 지급하거나 바우처제도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는 급식이나 돌봄서비스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기도 했는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부모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계획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때마다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생명이나 건강의 손실을 보거나 시간적·비용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새로운 위험은 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은 위험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면서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위험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거나 너무 과도한 공포감을 느끼는 때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위험(위기)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잘못들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단순히 코로나19 발발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교육도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어린이 미래교육의 방향성”, 「방정환 연구」 제5호, 방정환연구소, 2021, 13-33면.
- 김소연,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인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7, 173-195면.
- 김창환,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과 회복을 위한 교육적 과제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2021, 113-133면.
- 신용인, “위험사회와 안전권 -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 안전 -”,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3-29면.
- 윤인숙, “안전권”,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1-06」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이봉주·장희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폭력 잠재유형화와 잠재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70권 제1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21, 147-180면.
- 이장희,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인권 문제의 조망”, 「인권법평론」 제26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21, 37-78면.
- 이한태·전우석,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21-145면.
- 정익중,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3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47-59면.

<Abstract>

Response to school education crisis in the era of COVID-19

Lee, Han Joo*

Accidents such as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collapses, and infections are often difficult for humans to predict, but conversely, there are many cases of so-called human resources that can be avoided with a little caution.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types of disasters continue to occur, it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for the state to protect the people safely.

The COVID-19 pandemic has completely changed our daily lives, and schools and students have also undergone many changes. At the school site, teachers and students were in a confusing situation due to sudden difficulties in supplying equipment for remote learning, inexperience in how to use, and lack of education-related content. In addition, as students spend more time at home, the bond between family members is strengthened, but on the contrary, other problem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have arisen within the home.

This thesis briefl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safety, examines various situation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students, and compares the trends of foreign child care systems and school meals with those of our country to ensure safety in the current crisis. We would like to suggest a response direction and plan for this.

Key Words : safety rights, safety management, school education, distance learning, care policy

* Korean Medico-legal Institute Senior Researcher, Ph.D. in Law.